

##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트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사항** :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③ 반기 기준으로 갱신

□ **효력발생일** : 2023. 1. 27.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기재 정정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b>경과하였음에도</b>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9. 30. 기준</u>	<u>2022. 11. 30. 기준</u>
투자실적추이(연평균 수익률)	반기 기준으로 갱신	-	<u>2022. 11. 10. 기준</u>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10.31. 기준</u>	<u>2022. 12. 31. 기준</u>
투자자 유의사항	기재 정정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p>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람에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b>경과하였음에도</b>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람에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수익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수익자 : <b>(2023. 1. 1. 부터)</b>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 <b>(종합소득금액 4.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b>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10. 31. 기준	2022. 12.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10. 31. 기준	2022. 12. 31. 기준
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최근 3년 경과 내역 삭 제	<p>주식 책임운용역 : 안홍익 (2015.2.22~2018.10.10 )</p> <p>채권 책임운용역 : 문성호 (2015.02.22~2020.01.0 8)</p> <p>채권 부책임운용역 : 전춘 봉 (2017.07.27~2018.02.2 8)</p> <p>채권 부책임운용역 : 진재 식 (2017.07.28~2020.01.0 8)</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 주증권모투자신탁[주식] 책임운용역 : 안홍익 (2015.2.22~2018.10.10 ) -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 투자신탁[채권] 부책임운용역 : 전춘봉 (2017.07.28~2018.02.2 8)</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 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 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

<p>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p>		<p>3) 자산유동화증권 :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p> <p>가) (생략)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p> <p>① ~ ⑤ (생략)</p>	<p>3) 자산유동화증권 : <u>&lt;삭제&gt;</u></p> <p>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점까지)로 하며, <u>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u>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제한]</p>	<p>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2) 동일종목투자 :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u>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u></p> <p>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p>	<p>-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모투자신탁[주식]</p> <p>2) 동일종목투자 : <u>&lt;삭제&gt;</u> <u>&lt;삭제&gt;</u></p> <p>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p>

		<p>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p> <p>① ~ ⑤ (생략) (나) (생략)</p>	<p>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b>금융투자업규정 제 4-54 조 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 개월 까지(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3 호의 경우 이를 따 른다)</b>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p> <p>① ~ ⑤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p>
<p>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 구조</p> <p>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p>	-	<p><b>2022. 11 월말 기준</b></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p>	<p>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p>	<p><u>2022. 9. 30. 기준</u></p>	<p><u>2022. 11. 30. 기준</u></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나. 과세</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p>	<p>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p>	<p>③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u>400만원</u>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u>700만원</u>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③ 세액공제 (<u>2023.1.1.부터</u>):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u>600만원</u>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u>900만원</u> 한도로 12% (<u>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u>)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반기 기준으로 갱신	-	<u>2022. 11. 10.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반기 기준으로 갱신	-	<u>2022. 11. 10.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반기 기준으로 갱신	-	<u>2022. 11. 10. 기준</u>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10. 31 기준</u>	<u>2022. 12. 31.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10. 31 기준</u>	<u>2022. 12. 31. 기준</u>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생략)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 ⑩ (생략)	(2)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u>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 ) ③ ~ ⑩ (현행과 같음)
---------------------------------	---------------------	--	---